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92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안철수 · 김성원 · 김위상
서천호 · 신성범 · 김상훈
백종헌 · 김선교 · 김용태
최은석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환각·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용기·첨부분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용량 또는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7.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8. 성상(性狀)
9. 효능·효과
10. 용법·용량

11. 약물 운전(마약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12.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를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에 기재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의 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u>총리령으로 정하는</u>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 ----- -----<u>다음 각 호의</u> -----.</p> <p>1. <u>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 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 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 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 칭과 주소를 포함한다)</u></p> <p>2. <u>제품명</u></p> <p>3. <u>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u></p> <p>4. <u>중량, 용량 또는 개수</u></p> <p>5. <u>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포 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도 록 정한 사항</u></p> <p>6. <u>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 이라는 문자</u></p> <p>7. <u>“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u></p> <p>8. <u>성상(性狀)</u></p> <p>9. <u>효능·효과</u></p> <p>10. <u>용법·용량</u></p>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1. 약물 운전[마약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12.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를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6의2. (생략)

7. ~ 10. (생략)

②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

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